

문 1. 국제법상 주권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권면제는 국제법상 강행규범이므로 침해할 수 없다.
- ② 국가는 법정지국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에서 주권면제를 원용할 수 없다.
- ③ 본소에서 피고가 된 외국이 반소를 제기하더라도 본소에서 주권면제를 향유한다.
- ④ 국가가 타국법의 적용에 동의하면 그 국가 법원의 관할권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해설] ① [×] 일반적으로 주권면제가 국제법상 강행규범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② [○] 부동산에 관한 소송은 그 부동산 소재지국 재판소의 배타적 관할 하에 있는 것으로 본다. 2004년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UN협약」 제13조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 ③ [×] 본소에서 피고가 된 외국이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판관할권 면제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판관할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 ④ [×] 타국 법의 적용에 대한 국가의 동의는 그 타국 법정에 의한 관할권 행사에 대한 동의로 간주될 수 없다(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협약 제7조 제2항 참조).

[정답] ②

문 2.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재는 그 결과가 분쟁당사국에 대해 구속력을 지닌다는 점에서 조정과 다르고 중개와 같다.
- ② 중재는 오로지 국가 간 혹은 사인 간에 행해지고, 일방의 국가와 타방의 비국가적 실체 사이에는 행해지지 않는다.
- ③ 중재에서 재판준칙은 당사국이 합의하여 결정하지만, 특정 국가의 국내법을 재판준칙으로 삼을 수 없다.
- ④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절차가 있지만 권고적 의견에는 재심절차가 없다.

[해설] ① [×] 사법적 해결방법인 중재는 원칙적으로 그 결과가 분쟁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지만, 외교적 해결방법인 조정과 중개는 원칙적으로 그 결과가 분쟁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다.

- ② [×] 중재는 일반적으로 국가 간에 행해지지만, 국가 이외의 국제법 주체와 국가 사이에서도 행해질 수 있다.
- ③ [×] 중재에서 재판준칙은 당사국이 합의하여 결정하며, 당사국이 합의한다면 특정 국가의 국내법을 재판준칙으로 삼을 수도 있다.
- ④ [○]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상소제도는 없지만 재심절차는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에 대하여는 상소제도도 재심절차도 없다.

[정답] ④

문 3. 영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영사는 파견국에 등록된 항공기에 대하여 파견국의 법령에 따른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영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국을 외교적으로 대표할 수 없다.
- ③ 영사 면제 및 특권은 파견국의 국적을 가진 영사만이 향유한다.
- ④ 영사인가장 부여를 거절한 접수국은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해설] ① [○] 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 제5조 (k)호.

- ② [×] 파견국이 외교공관을 가지지 아니하고 또한 제3국의 외교공관에 의하여 대표되지 아니하는 국가 내에서 영사관원은, 접수국의 동

의를 받아 또한 그의 영사지위에 영향을 미침이 없이, 외교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 제17조 제1항).

- ③ [×] 영사는 원칙적으로 파견국의 국적을 가져야 하지만, 접수국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접수국의 국적을 가진 자를 임명할 수도 있다(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 제22조).
- ④ [×] 접수국은 영사기관장으로 임명된 자를 반드시 접수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영사인가장 부여를 거절할 수 있으나, 이 때 그 이유를 제시할 의무는 없다(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 제23조).

[정답] ①

문 4.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영해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영해의 직선기선을 설정할 때 특정 지역의 경제적 이익은 고려사항이 아니다.
- ② 간조노출지의 저조선은 영해 측정 기선으로 사용될 수 없다.
- ③ 국가는 어떠한 경우라도 타국의 영해를 공해로부터 격리시키는 방법으로 직선기선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 ④ 만의 입구를 직선으로 연결하여 기선으로 삼을 경우, 만 폐쇄선 안쪽의 수역은 영해로 본다.

[해설] ① [×] 직선기선의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특정한 기선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지역에 특유한 경제적 이익이 있다는 사실과 그 중요성이 오랜 관행에 의하여 명백히 증명된 경우 그 경제적 이익을 고려할 수 있다(UN해양법협약 제7조 제5항).

- ② [×] 간조노출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토나 섬으로부터 영해의 폭을 넘지 아니하는 거리에 위치하는 경우, 그 간조노출지의 저조선을 영해기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UN해양법협약 제13조 제1항).
- ③ [○]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영해를 공해나 배타적경제수역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방식으로 직선기선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UN해양법협약 제7조 제6항).
- ④ [×] 제4부(군도수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해기선의 육지 쪽 수역은 그 국가의 내수의 일부를 구성한다(UN해양법협약 제8조 제1항).

[정답] ③

문 5. 상공 및 외기권 우주에 대한 국제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국제해협의 통과통행이 적용되는 상부 공간에 대해서는 연안국이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 1967년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은 달을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③ 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연안국의 주권이 인정되는 공역(空域)이다.
- ④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은 항공교통관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역으로 국제법상 주권적 성격을 가지는 영공으로 간주된다.

[해설] ① [○] 통과통행이라 함은 공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의 일부와 공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의 다른 부분간의 해협을 오직 계속적으로 신속히 통과할 목적으로 이 부에 따라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행사함을 말한다(UN해양법협약 제38조 제2항). 해협연안국은 통과통행권을 방해할 수 없으며 자국이 인지하고 있는 해협 내 또는 해협 상공에 있어서의 항행이나 비행에 관한 위험을 적절히 공표한다. 통과통행은 정지될 수 없다(UN해양법협약 제44조).

- ② [×] 1979년 「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활동에 관한 협약」에서 달과 기타 천체 및 그 천연자원을 인류공동유산으로 하였으며, 이는

인류공동유산을 규정한 최초의 조약이다.

- ③ [×] 방공식별구역(ADIZ)은 영공의 방위를 위해 영공 외곽 공해 상공에 설정되는 공중구역이다. 국가들은 자위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설정하여 선포하지만 국제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 ④ [×] 비행정보구역(FIR)이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항공교통 관제를 위해 각 나라가 담당하는 공역을 구분한 것을 말한다. 비행정보구역상의 항공기는 관할 국가 요청시 제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정답] ①

문 6.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 금지되는 수량제한조치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수출입할당
 ㄴ. 수출입허가
 ㄷ. 최저수입가격제도
 ㄹ. 매년 자동 갱신되는 수입면허제도
 ㅁ. 국내 판매에 영향을 주는 법령
 ㅂ. 국내 농수산물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ㄷ, ㄹ, ㅁ ④ ㄷ, ㄹ, ㅂ

[해설] GATT 제1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다.

■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11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제약국은 다른 제약국 영역의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또는 다른 제약국 영역으로 향하는 상품의 수출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할당제나 수입허가 또는 수출허가 또는 기타 조치에 의거하거나 불문하고 관세, 조세 또는 기타 과징금을 제외한 금지 또는 제한을 설정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①

문 7. 「전시에 있어서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제네바협약(제4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적대행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 없이 인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
- ② 전시 점령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점령지의 현행 법령을 존중해야 한다.
- ③ 피보호자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 ④ 피보호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국 영역으로 강제 이송하거나 추방되어서는 아니 된다.

[해설] ① [○] 무기를 버린 군대의 구성원 및 질병, 부상, 역류 또는 기타 사유로 전투 외에 놓여진 자를 포함하여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는 자는 인종, 색, 종교 또는 신앙, 성, 가문 또는 재산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기준에 근거한 불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인도적으로 대우하여야 한다(전시민간인보호에관한제네바협약 제3조 제1항).

② [×] 피점령국의 형벌법령은 그것이 점령국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또는 본 협약의 적용을 방해한 때에 점령국이 이를 폐지 또는 정지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전시민간인보호에관한제네바협약 제64조). 위 조문의 반대해석상 점령국은 점령국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또는 전시민간인보호에관한제네바협약의 적용을 방해하는 피점령국의 형벌법령을 폐지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③ [○] 피보호자 또는 제삼자로부터 특히 정보를 얻기 위하여 피보호자들에게 육체적 또는 정신적 강제를 가하여서는 안된다(전시민간인보호에관한제네바협약 제31조).

④ [○] 피보호자들을 점령지역으로부터 점령국의 영역 또는 피 점령

여부를 불문하고 타국의 영역으로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강제 이송 또는 추방하는 것은 그 이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금지된다(전시민간인보호에관한제네바협약 제49조).

[정답] ②

문 8.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은 선진국이 배정받은 킬토보다 적게 배출한 온실가스의 차이분을 다른 국가에 매각할 수 있는 거래 제도를 도입하였다.
- ②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는 모든 당사국에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를 공통으로 부과하면서도 감축치를 차등적으로 정하였다.
- ③ 「파리협정」은 기존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섭씨 2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역사적 누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에 한정하여 감축의무를 부과하였다.
- ④ 「파리협정」에 따라 국가별 감축은 개별 국가가 5년 단위로 제출하는 자발적 기여 방안에 따라 이행하기로 하고, 별도의 등록부를 통해 관리하기로 하였다.

[해설] ① [×] 배출권거래제도를 규정한 것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이다.

② [×] 교토의정서는 제1부속서에 포함된 당사국들에게는 부속서A에 포함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2012년의 5년 동안 1990년 대비 최소 5% 감축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구체적인 감축목표치는 국가별로 다르게 할당되어 있다. 그러나 제1부속서에 포함되지 않은 당사국에게는 감축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③ [×] ④ [○]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파리)에서는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될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었다. 이로써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던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넘어 모든 국가가 자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참여하는 보편적인 체제가 마련되었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지구적 장기목표 하에 모든 국가가 2020년부터 기후행동에 참여하며, 5년 주기 이행점검을 통해 점차 노력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리협정은 또한, 모든 국가가 스스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단위로 제출하고 국내적으로 이행토록 하고 있으며, 재원 조성 관련, 선진국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여타국가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협정은 기후행동 및 지원에 대한 투명성 체제를 강화하면서도 각국의 능력을 감안하여 유연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파리협정의 이행 및 장기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는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을 실시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2015년 12월 파리에서 채택되고, 2016년 4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서명된 파리협정은 10월 5일 발효요건이 충족되어 30일 후인 11월 4일 공식 발효되었다.

[정답] ④

문 9.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서 인정하는 예외사항으로서 당사국이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제12조의 국제수지보호조치
 ㄴ. 제19조의 긴급수입제한조치
 ㄷ. 제20조에 근거한 수입 제한조치
 ㄹ. 제21조에 근거한 수출 제한조치
 ㅁ. 제25조제5항에 따른 의무면제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ㄷ, ㅁ

[해설] ㄱ. [X] ㄴ. [X] GATT 제12조의 '국제수지의 보호를 위한 제한'과 GATT 제19조의 '특정상품의 수입에 대한 긴급조치'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ㄷ. [O] ㄹ. [O] 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와 GATT 제21조의 '안전보장을 위한 예외'는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여 당사국이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ㅁ. [X] GATT 제25조 제5항의 의무면제에 대한 결정은 투표된 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하며 또한 이러한 다수는 계약국수의 과반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정답] ③

문 10.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가 2001년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상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는 그 행위국의 피해배상(reparation for injury)의무를 완전하게 면제시킨다.
- ②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는 해당 규범의 법적 성질에 관계없이 모든 국제법규범의 위반을 정당화한다.
- ③ 국제위법행위가 국제공동체의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더라도 그 행위국의 본질적 이익을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일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④ 조난(distress)은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고, 긴급피난(necessity)은 국가의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고 급박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다.

[해설] ① [X] 제27조 (b)호에서는 위법성 조각의 주장이 문제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물질적 손해에 대한 보상의 문제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X] 제26조에서는 강행규범을 위반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X] 제25조에서는 국제공동체의 본질적인 이익을 중대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긴급피난을 위법성조각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O] 조난은 개인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고(제24조), 긴급피난은 국가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이다(제25조).

[정답] ④

문 11. 국제연합 총회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국제연합 사무총장의 임명
- ㄴ. 국제연합 예산안의 심의 및 승인
- ㄷ.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선출
- ㄹ. 투표권이 정지된 분담금 미납 국제연합 회원국의 투표 허용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해설] ㄱ. [X]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로 총회가 임명한다(UN헌장 제97조).

ㄴ. [O] 총회는 기구의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한다(UN헌장 제17조 제1항).

ㄷ. [X] 안전보장이사회는 15개 국제연합회원국으로 구성된다. 중화민국, 불란서,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영국 및 미합중국은 안

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다. 총회는 먼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기구의 기타 목적에 대한 국제연합회원국의 공헌과 또한 공평한 지리적 배분을 특별히 고려하여 그 외 10개의 국제연합회원국을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한다(UN헌장 제23조 제1항).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은 UN헌장에 명시되어 있다.

ㄹ. [X] 기구에 대한 재정적 분담금의 지불을 연체한 국제연합 회원국은 그 연체금액이 그때까지의 만 2년간 그 나라가 지불하였어야 할 분담금의 금액과 같거나 또는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그럼에도 총회는 지불의 불이행이 그 회원국이 제어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회원국의 투표를 허용할 수 있다(UN헌장 제19조).

[정답] ③

문 12. 국제인권규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인권규약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포함한다.
- ②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두 자결권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다.
- ③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받은 개인이 국내적 구제조치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보장된다.
- ④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받은 개인이 국제적으로 통보를 제출할 수 있는 국제진정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해설] ① [O] 국제인권규약은 A규약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B규약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포함한다.

② [O]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두 제1조에서 민족자결권을 규정하고 있다.

③ [X] B규약 선택의정서에서는 B규약상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단체는 불가)이 국내구제절차를 완료한 후에 인권이사회에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④ [O] A규약 선택의정서에서는 A규약상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국내구제절차를 완료한 후에 사회권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정답] ③

문 13. 국제법상 국가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승인을 받지 않은 국가적 실체는 국제법상 권리를 향유하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② 국제연합 가입과 국제연합 회원국 상호간의 국가승인은 별개 문제이다.
- ③ 외교관계의 단절은 승인의 철회로 간주된다.
- ④ 국제연합 회원국은 무력사용으로 수립된 국가를 승인할 수 있다.

[해설] ① [X] 미승인국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전투수행이나 외국인의 권익보호에 관한 국가책임의 이행에 관하여는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국제법주체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승인이 없다고 해서 양국 간에 아무런 법률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단지 외교관계 수립과 같은 통상적인 국가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해당 국가가 국제법 주체로서 취급되지 않을 뿐이다.

② [O] 신회원국의 UN가입과 국가승인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

이 일반적 견해다.

- ③ [×] 외교관계 수립은 묵시적 국가승인으로 인정되나, 외교관계의 단절이 반드시 승인의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④ [×] UN헌장은 전문과 제2조 제4호에서 무력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정답] ②

문 14.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접수국이 아닌 제3국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3국은 외교관의 체류 목적을 불문하고 그 외교관에게 불가침권을 부여해야 한다.
② 제3국은 통과 중인 통신문 및 외교행낭에 대한 불가침성을 접수국에서와 동일하게 부여해야 한다.
③ 제3국은 노무직원의 통과에 대하여 이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④ 제3국은 불가항력으로 자국 영역에 들어온 외교관 가족의 귀국 보장에 필요한 면제를 부여해야 한다.

[해설] ① [×] 외교관이 부임, 귀임 또는 본국으로 귀국하는 도중, 여권사증이 필요한 경우 그에게 여권사증을 부여한 제3국을 통과하거나 또는 제3국의 영역 내에 있을 경우에, 제3국은 그에게 불가침권과 그의 통과나 귀국을 보장함에 필요한 기타 면제를 부여하여야 한다(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 제40조 제1항). 제3국은 부임, 귀임 또는 본국으로 귀국하는 도중에 있는 외교관에 대하여만 불가침권을 부여한다.

② [○] 제3국은, 사증이 필요한 경우 여권사증이 부여된 외교신서사와 통과중인 외교행낭에 대하여 접수국이 부여하여야 하는 동일한 불가침권과 보호를 부여하여야 한다(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 제40조 제3항).

③ [○]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것과 유사한 사정하에서 제3국은, 공관의 행정 및 기능직원 또는 노무직원과 그들 가족이 그 영토를 통과함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 제40조 제2항).

④ [○] 본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3국의 의무는 전기 각항에서 언급한 자와 공용통신 및 외교행낭이 불가항력으로 제3국의 영역 내에 들어간 경우에도 적용된다(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 제40조 제4항).

[정답] ①

문 15. 국제법상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위권 발동 여부는 1차적으로 개별 국가가 판단하며, 무력공격의 존재 여부는 공격을 당한 국가가 증명해야 한다.
② 침략국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경제제재 중에는 피침략국이 영토 침범 상태하에 놓여 있다라도 개별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국제연합 헌장」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자위권의 내용은 국제관습법에 의해 보완된다는 것이 국제사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④ 이미 종료된 공격에 대항한 무력공격은 국제법상 금지된 무력복구에 해당한다.

[해설] ① [○] 국제사회에는 조직적인 중앙기관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자위권의 요건구비 여부에 대한 1차적인 판단은 결국 자위권을 행사하는 국가 자신이 이를 행사할 수 밖에 없다.

② [×] 피침략국의 자위권 행사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만 허용된다. 이것은 안전보장이사회가 피침략국에 의한 무력행사를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것으로 만드는 실효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는 피침략국의 자위권 행사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대순).

③ [○] 국제사법재판소는 UN헌장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집단적 자위권의 요건에 대하여 국제관습법에 기초한 판단을 한바 있다(니카라과 사건).

④ [○] 자위권 행사를 위해서는 무력공격의 급박성이 요구된다. 이미 종료된 무력공격에 대항하여 하는 무력공격은 무력복구에 해당한다.

[정답] ②

문 16.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 「법적 의무를 창출하는 국가의 일방적 선언에 관한 적용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두로 발표된 일방적 선언은 이를 명백히 수락한 제3국에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국가원수, 정부수반, 외교장관은 법적 구속력 있는 일방적 선언을 발표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자로 인정된다.
③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일방적 선언은 특정 국가가 아닌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해 발표되어야 한다.
④ 법적 구속력 있는 일방적 선언에 포함된 의무의 범위에 의심이 발생하는 경우, 그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해설] ① [○] 일방적 선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원칙 5). 공개적으로 행하고 구속받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는 선언은 법적 의무를 창설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원칙 1).

② [○] 일방적 선언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당국이 행하는 경우에만 그 국가를 국제적으로 구속한다. 그 직무에 의하여 국가원수와 정부수반, 외교장관은 그러한 선언을 천명할 권한이 있다(원칙 4).

③ [×] 일방적 선언은 국제공동체 전체를 상대로 행할 수도 있고, 한 개 국가나 여러 국가를 상대로 행할 수도 있으며, 또한 다른 실체를 상대로 행할 수도 있다(원칙 6).

④ [○] 일방적 선언은 그것이 분명하고 구체적인 조건으로 진술되는 경우에만 선언국에 의무를 초래한다. 그러한 선언에서 유래하는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 의무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한 의무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선언된 문맥과 상황과 더불어 가장 먼저 선언의 텍스트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원칙 7).

[정답] ③

문 17.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가서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조약문의 정본인증 후 발견된 착오의 정정과 가서명은 그 착오를 정정하는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② 조약문의 가서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속적 동의를 위한 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조약문의 가서명은 해당 대표의 본국이 확인하는 경우에만 해당 조약의 정식 서명으로 간주된다.
④ 조약문의 가서명은 조약문의 정본인증을 위한 절차에 해당할 수 있다.

[해설] ① [×]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79조 제1항

■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79조 【조약문 또는 인증등본상의 착오 정정】

1. 조약문의 정본인증 후 그 속에 착오가 있다는 것에 서명국 및 체결국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들이 다른 정정방법에 관하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착오는 다음과 같이 정정된다.
(a) 착오문에 적당한 정정을 가하고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가 그 정정에 가서명하는 것
(b) 합의된 정정을 기재한 1 또는 그 이상의 문서에 효력을 부여하거나 또는 이를 교환하는 것

(c) 원본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조약 전체의 정정본을 작성하는 것

② [×] ③ [×]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12조

■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12조 【서명에 의하여 표시되는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

1.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는 다음의 경우에 국가대표에 의한 서명에 의하여 표시된다.
 - (a) 서명이 그러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그 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
 - (b) 서명이 그러한 효과를 가져야 하는 것으로 교섭국간에 합의되었음이 달리 확정되는 경우 또는
 - (c) 서명에 그러한 효과를 부여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사가 그 대표의 전권위임장으로부터 나타나는 경우 또는 교섭 중에 표시된 경우
2. 상기 1항의 목적상
 - (a) 조약문의 가서명이 그 조약의 서명을 구성하는 것으로 교섭국간에 합의되었음이 확정되는 경우에 그 가서명은 그 조약문의 서명을 구성한다.
 - (b) 대표에 의한 조약의 「조건부 서명」은 대표의 본국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조약의 완전한 서명을 구성한다.

④ [○]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10조

■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10조 【조약문의 정본인증】
조약문은 다음의 것에 의하여 정본으로 또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 (a) 조약문에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조약문의 작성에 참가한 국가가 합의하는 절차 또는
- (b) 그러한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조약문의 작성에 참가한 국가의 대표에 의한 조약문 또는 조약문을 포함하는 회의의 최종의정서에서의 서명, 「조건부서명」 또는 가서명

[정답] ④

문 18. 국제법상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복수 국가의 합의로 설립된 모든 기구는 독자적 법인격이 자동적으로 인정된다.
- ② 국제기구 회원국의 상주대표부 설치에 국제관습법에 따라 해당 기구 및 소재지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국제기구는 기구의 목적 및 기능과 충돌하는 권한을 묵시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추론될 수 없다.
- ④ 국제기구 직원의 면제와 특권은 한시적으로 제한된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① [×] 모든 국제기구에 독자적 법인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 국제기구 회원국의 상주대표부 설치 문제는 일반적으로 본부 설치에 관한 협정 등을 체결하여 그 규정에 따르고 있다.

③ [○] 묵시적 권한 이론이란 국제기구의 설립조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제기구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목적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모든 권한은 인정된다는 것을 말한다. 기구의 목적 및 기능과 충돌하는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 국제기구의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위해 국제기구의 재산·본부·직원 등에 대해 일정한 특권·면제가 인정된다. 특권·면제가 인정되는 국제기구 직원의 범위에는 한시적으로 제한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정답] ③

문 19. 우리나라 「국적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

면?

- ㄱ. 국적은 국가의 인적 관할권 행사의 기초가 된다.
- ㄴ. 「국적법」은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 ㄷ. 국가는 국내법에 따라 자국민의 범위를 결정할 재량권을 갖지 못한다.
- ㄹ. 국가는 개인의 국적을 자의적으로 박탈할 수 없고, 개인은 자신의 국적을 변경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 ㅁ. 「국적법」은 후천적 복수 국적자가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경우 외국 국적의 유지를 허용하고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해설] ㄱ. [○] 국적은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민에 대한 관할권 행사의 근거가 되며, 이러한 국적에 기인한 자국민에 대한 관할권을 속인주의 관할권이라 한다.

ㄴ. [○] 우리나라 국적법은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국적법 제2조).

ㄷ. [×] 국가가 어떤 개인에게 자국의 국적을 부여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그 국가의 국내문제에 속한다. 다만 절대적인 국내문제는 아니고 상대적·가변적인 국내문제라는 한계가 있다(튀니지-모로코 국적법 사건).

ㄹ. [×] 국가는 일정한 경우 개인의 국적을 박탈할 수 있으며, 또한 개인도 일정한 경우 자신의 국적을 변경할 권리가 있다.

ㅁ. [○]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국적법 제12조 제1항).

[정답] ②

문 20.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영해 및 접속수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연안국의 접속수역은 내수를 포함하며 관세·재정·출입국관리·위생 및 군사적 목적의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한 수역이다.
- ② 연안국은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 내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민사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선박을 정지시킬 수 있다.
- ③ 연안국은 자국의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과 중인 외국선박에 대하여 범인 체포에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
- ④ 외국항공기는 연안국의 동의가 없더라도 영해 상공에서 비행의 자유를 향유한다.

[해설] ① [×] 내수는 영해기선의 육지 쪽 수역을 의미하며(UN해양법협약 제8조), 접속수역은 연안국의 영해에 접속해 있는 수역으로 연안국의 영토나 영해에서의 관세·재정·출입국관리 또는 위생에 관한 법령의 위반방지를 그 처벌을 위하여 필요한 통제를 할 수 있는 수역을 말한다(UN해양법협약 제33조). 내수는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으로서 접속수역과는 구별된다.

② [×] 연안국은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 내에 있는 사람에 대한 민사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선박을 정지시키거나 항로를 변경시킬 수 없다(UN해양법협약 제28조 제1항).

③ [○] 위의 규정은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 내에서의 체포나 수사를 목적으로 자국법이 허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연안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UN해양법협약 제27조 제

2항).

- ④ [×] 연안국의 영해에서 외국은 무해통항권을 가지나 이는 선박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며, 항공기의 무해통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③